

점수이민제에 의한 전문인력(F-2-7) 체류자격 변경

□ 우수인재 점수제 비자 신청 가능 대상

1. 전문직·준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단,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은 제외)

- ① 신청일 현재 신청 당시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일 것.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가.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자(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나.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초청 대상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서는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시에도 신청 가능)
- ②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체류 요건을 갖추었을 것
-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① 신청일 현재 유학(D-2) 또는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합산하여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일 것
- ② 국내에서 정규 석사 이상의 과정을 마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을 것(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시에도 신청 가능)
- ③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숙련기능인력(E-7-4) 제외)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단,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미취업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
- ④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해당 상장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①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되어 있을 것
- ②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점수제 우수인재 대상 결격사유]

점수제 우수인재 신청인(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이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신청이 불가하며,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가 발생·확인되는 경우에는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취소

-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모든 결격사유에 관하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이 이뤄진 이후 심사 진행
-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불허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민원은 제출 서류 및 대상자에 대한 검토 후 결정되며, 심사 도중에 추가서류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외 서류의 경우 공적확인이 요구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 해당 국 소재 대한민국 공관 영사확인
- 출입국관서 방문 전 하이코리아를 통한 사전 방문예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문의는 국번없이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13만 원, 통합신청서(별지34호),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별도 서식)
- 가족관계 소명 서류 (동반가족이 국내에서 함께 체류하고 있는 경우 제출)
- 체류지 입증 서류
- 현 직업 입증 서류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인 경우), 재학증명서(재학생일 경우) 등
-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한 가장 최신 연도의
소득금액증명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자격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대상 : '20.12.1. 이후 점수제 거주 자격을 신규 취득하는 사람
- 점수제 평가를 위한 서류 : 점수표 및 소명 자료

평가 항목		인정 서류	비 고
공 통	나이	제출 불요	여권 등으로 확인함
	학력	학위증	수료증 불인정
	한국어능력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제출 불필요
	연간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자영업자, 사업자 등)'만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모두 있는 경우 :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②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③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상장법인 취업(예정)자로서 소득금액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연봉이 기재된 고용계약서 제출	
가 점	참전국민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점수만 기재할 것	해당기관에서 공문을 직접 법무부에 송부하기 때문에 제출불필요
	중앙행정기관 추천		
	사회통합 프로그램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점수만 기재할 것	법무부에서 전산 확인
	우수·국내 대학	학위증	수료증 불인정
	국내사회 봉사활동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www.vms.or.kr)을 통해 출력된 서류	
감 점	국내법위반	제출 불요	시스템으로 확인 원칙 필요시 관련 서류 제출 요구

[항목별 배점 및 심사 기준]

- 비자발급인정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시 항목별 배점 평가
- 동반가족은 평가 대상이 아니며, 점수제 평가대상자의 합격 여부에 따라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발급인정서 ·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

1. 평가항목별 배점 (가점 포함 최대 총 170점)

구분	공통 평가 항목 (최대 130점)				가·감점 항목	
	나이	학력	한국어능력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간 소득	가점	감점
최대 배점	25	25	20	60	40	-80

2. 합격점수 : 80점 이상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

3.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및 평가 기준

○ 나이 (최대 25점)

구분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0세	51세 이상
배 점	23	25	23	20	12	8	3
기 준	· 여권 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						

○ 학력 (최대 25점)

학 력	박 사		석 사		학 사		전 문 학 사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이공계 외
배점	25	20	20	17	17	15	15	10
기 준	· 학위증(수료는 제외하며,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개 이상 : 계열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정							

○ 한국어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최대 20점)

한 국 어 능 력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고급)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중급)		기본적인 의사소통 (초급)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4급/ 4단계	3급/ 3단계	2급/ 2단계	1급/ 1단계
배점	20	15	10	5	3
기 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참조)별 점수 부여				

○ 가점항목 (최대 40점까지 인정)

○ 가점항목 (최대 40점까지 인정)

○ 가점항목 (최대 40점까지 인정)

○ 가점항목 (최대 40점까지 인정)

○ 감점항목 (최대 80점)

○ 감점항목 (최대 80점)

< 서약 사항 >

신청 결격사유가 없으며, 기재사항 및 제출사항이 진실함을 서약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서명:
-----	-------	-----

구분	공통 평가 항목 (최대 130점)				가점 (최대 40점)	합계
	나이	학력	한국어능력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간 소득		
최대 배점						

구 분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0세	51세 이상
배 점	23	25	23	20	12	8	3

학 력	박 사		석 사		학 사		전 문 학 사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이공계 외
배 점	25	20	20	17	17	15	15	10

한국어 능력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고급)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중급)		기본적인 의사소통 (초급)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4급/ 4단계	3급/ 3단계	2급/ 2단계	1급/ 1단계
배점	20	15	10	5	3

연 간 소 득	1억원 이상	9천만~1억원 미만	8천만~9천만원 미만	7천만~8천만원 미만	6천만~7천만원 미만	5천만~6천만원 미만	4천만~5천만원 미만	3천만~4천만원 미만	최저임금 이상~3천만
배 점	60	58	56	53	50	45	40	30	10

가점	참 전 국 민	정 부 추 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우수대 학/국내대 학 학위보유			국내 사회봉사 활동		
항목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중앙 행정기관 추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이수자	우수대학박사/ 국내대학박사	우수대학석사/ 국내대학석사	우수대학학사/ 국내대학학사	3년 이상	2-3년 미만	1-2년 미만
배 점	20	20	10	30 / 10	20 / 7	15 / 5	7	5	1

[점수제 우수인재 대상 결격사유]

점수제 우수인재 신청인(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이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신청이 불가하며,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가 발생·확인되는 경우에는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취소

- ①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 ②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④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⑤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모든 결격사유에 관하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이 이뤄진 이후 심사 진행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불허

[취업 제한 분야]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악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기타 체류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서약 사항 >

신청 결격사유가 없으며, 기재사항 및 제출사항이 진실함을 서약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서명:
-----	-------	-----

구분	공통 평가 항목 (최대 130점)				가점 (최대 40점)	합계
	나이	학력	한국어능력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간 소득		
최대 배점						

구 분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0세	51세 이상
배 점	23	25	23	20	12	8	3

학 력	박 사		석 사		학 사		전 문 학 사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이공계 외
배 점	25	20	20	17	17	15	15	10

한국어 능력	사회생활에서 충분한 의사소통 (고급)	친숙한 주제 의사소통 (중급)		기본적인 의사소통 (초급)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4급/ 4단계	3급/ 3단계	2급/ 2단계	1급/ 1단계
배점	20	15	10	5	3

연 간 소 득	1억원 이상	9천만~1억원 미만	8천만~9천만원 미만	7천만~8천만원 미만	6천만~7천만원 미만	5천만~6천만원 미만	4천만~5천만원 미만	3천만~4천만원 미만	최저임금 이상~3천만
배 점	60	58	56	53	50	45	40	30	10

가점	참 전 국 민	정 부 추 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우수대 학/국내대 학 학위보유			국내 사회봉사 활동		
항목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중앙 행정기관 추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이수자	우수대학박사/ 국내대학박사	우수대학석사/ 국내대학석사	우수대학학사/ 국내대학학사	3년 이상	2-3년 미만	1-2년 미만
배 점	20	20	10	30 / 10	20 / 7	15 / 5	7	5	1